

2023 / vol. 28

말레이시아 할랄인증제도

2023.12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FOODCERTI
ISSUE REPORT

foodcerti.or.kr
1588-0559

CONTENTS

1 / 할랄인증기관

2 / 할랄인증표준

3 / 할랄인증절차

4 / 수입절차

1. 할랄인증기관

가. 할랄인증 권한 기관

1) JAKIM(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

» 말레이시아 할랄인증표준이란 무슬림에서 허용된 제품 및 서비스 등을 충족하도록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에서 제정한 일련의 지침을 말함.

* JAKIM(이슬람개발부)

- 말레이시아 할랄로고 개발 및 할랄인증시스템을 시행하는 정부기관으로 2012년부터 말레이시아 유일의 할랄인증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음.
- 이슬람 율법에 따라 말레이시아의 무슬림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JAKIM의 주된 역할로, 이를 위해 국내외 수출시장에 대한 할랄인증서의 발급부터 모니터링 및 할랄 지침을 시행함.

가) 인증범위

» 말레이시아 할랄인증은 업체 소재지에 따라 국내인증과 국제인증으로 구분함

구분	대상 (업체 소재지)	인증 분야	신청 경로	인증 기간 (조건과 절차 준수 시)
국내인증	말레이시아	식품, 식당, 화장품, 의약품, 호텔, 금융분야	온라인	약 2개월
국제인증	말레이시아 외	식품 및 화장품 분야	온라인	약 2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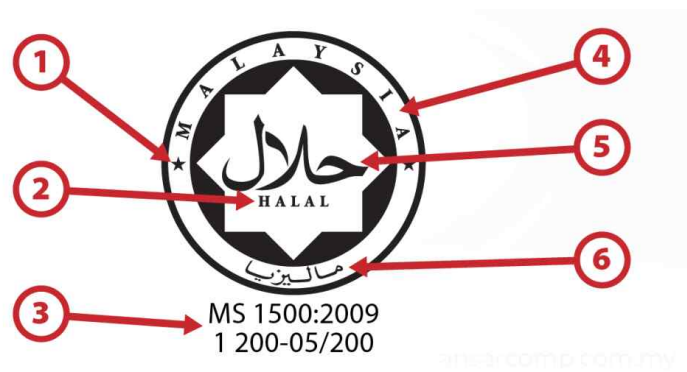
<표 1> 말레이시아 할랄인증 구분 및 내용

나) 할랄로고

» JAKIM 공인 할랄로고는 아래와 같은 6가지 사항을 내포하고 있음

- ① 바깥쪽 원의 오른쪽과 왼쪽에 5각형 모양의 2개의 별을 각각 배치하여 MALAYSIA (말레이시아)와 “ماليزيا(말레이시아)”를 분리

- ② 원 중앙에 “HALAL(할랄)” 표기
- ③ 윗줄에 기재된 영어와 숫자는 12가지 할랄 인증기준 유형 중 하나를 나타내며 하단의 숫자는 인증서마다 부여된 고유한 일련번호를 뜻함.
ex) MS 1500:2009는 할랄식품: 생산·준비·취급 및 저장에 관한 일반지침을 준수하여 생산된 식품임을 보장하는 인증 기준 유형중 하나
- ④ 원 최상단에 “MALAYSIA(말레이시아)” 표기
- ⑤ 원 중앙에 ‘حلال(할랄)’ 아랍어 표기
- ⑥ 원 하단에 “ماليزيا(말레이시아)” 아랍어 표기



<그림 1> 말레이시아 할랄로고(JAKIM/JAIN/MAIN)
출처: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alaysia

2) 주 이슬람종교국(Jabatan Agama Islam Negeri: JAIN) 및 주 이슬람종교 협의회(Majlis Agama Islam Negeri: MAIN)

» 두 기관 모두 할랄의 진정성(integrity)을 보호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지원하며, 할랄 인증서(국내인증)를 발행함

나. 할랄산업 관련 기관

1) 할랄산업개발공사(Halal Industry Development Corporation: HDC)

» 2006년 9월 18일에 설립된 할랄산업개발공사는 말레이시아 할랄산업 개발을 위한 총괄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 할랄산업개발공사의 역할과 책임
- 할랄표준, 심사 및 인증절차 개발 선도

- 공공 및 민간의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할랄산업 발전 지휘 및 조정
- 할랄생산자 및 관련 공급업자들의 능력배양 관리
- 말레이시아 할랄산업 투자 지원
- 글로벌 할랄시장에 말레이시아 기업들의 성장 및 참여를 용이하게 함
- 말레이시아 할랄 브랜드 개발, 촉진 및 유통
- 할랄 개념 및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촉진

» 할랄산업개발공사는 단순히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할랄지식과 할랄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말레이시아가 세계적인 리더와 글로벌 창조센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GHSC(Global Halal Support Center)*를 설립하여 운영

* OneTouchPoint(OTP), Halal Knowledge Center, Anchor Programme, Halal Park 프로그램 운영

2) 국내거래협동조합소비자부(Ministry of Domestic Trade, Co-operatives & Consumerism: MDTCC)

» 국내거래협동조합소비자부(MDTCC)는 윤리적 거래 관행을 장려하며, 할랄의 진실성, 할랄 로고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제공함

3) 국제통상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ITI)

» 국제통상산업부(MITI)는 원산지증명서(PCO, NPCO)의 발급과 같은 수출 실무부터 국제투자진흥정책 시행 및 투자유치 등 말레이시아의 글로벌 경쟁력 촉진 및 전략화를 위한 업무 수행

4) 농업 및 농업기반부(Ministry of Agriculture & Agro-based Industry: MOA)

가) 수의국(Department of Veterinary Services: DVS)

»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 Agro-based Industry) 산하 연방 정부기관인 수의국(DVS)은 말레이시아 동물 및 가축 산업의 복지를 담당하는 유일한 기관

» 수의국(DVS)의 목적

- 동물 건강 상태의 강화 및 유지
- 동물 기반 제품에 대한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및 생산품에 대한 공중보건 보증
- 지속 가능한 축산 생산 및 부가가치 산업 장려
- 동물 기반 산업에 있어 기술사용 및 자원의 최적 사용 탐색, 개발 및 장려
- 사육 및 생산 시스템의 모든 측면에 있어 동물 복지사례 홍보

» 이외에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동물성 식품의 검역을 담당하며, 검역이 승인된 제품에 한하여 **동물건강증명서(Veterinary Health Certificate)** 발행

나) 검역처(Malaysian Quarantine & Inspection Services: MAQIS)

» 말레이시아 검역처(MAQIS)는 농업 및 농업기반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Agro-based Industry Malaysia) 산하기관으로 진입지점 및 검역소에서 식물, 동물, 시체, 생선, 농산물, 토양 및 미생물의 수출입에 대한 검역과 식품, 관련 생산품에 대한 검사, 집행 등 통합형 서비스를 제공함

- 식품 및 관련 생산품에 대한 해충, 질병, 오염물질 존재여부 검사를 통해 해당 수입 품목과 수입면허·수입허가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함

- 식품 및 육류 제품과 같은 모든 신선 농산물은 말레이시아 내로 반입되기 전 특정 위생 및 식품 위생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검역 및 검사를 진행하며, 안전하지 못한 제품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기관이 압수하여 폐기

» 말레이시아 검역처(MAQIS)는 물리적 검사를 통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함

- 수입 제품의 해충, 질병 혹은 오염 물질의 포함 여부
- 수입 물품의 등급 표시, 포장, 라벨 부착 여부
- 제품의 종류 및 명확한 수량 표시 여부
- 수입 물품의 사전 처리 및 검역 여부
- 축산 부류 수입의 할랄인증 여부

다) 작물보호 및 식물검역본부(Crop Protection and Plant Quarantine Division)

- » 농업국(Agriculture Department) 산하 작물보호 및 식물검역본부(Crop Protection and Plant Quarantine Division)는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식물성 식품의 검역을 담당함
- » 식물검역법 1976, 관세법 2008(수출입 금지),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법 2008(법 686)에 따라 수입허가, 수출허가 및 인증서를 발급하며 이는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함.

라) 쌀 농공본부(Paddy and Rice Industry Division)

- » 농업부(MOA) 산하조직인 쌀 농공본부(Paddy and Rice Industry Division)는 쌀의 수출입을 담당하며, 특히 수입쌀의 검역을 집행함.
- » 쌀과 벼 관리법 제정에 따라 적합한 유통·수입·수출 허가자에게는, 쌀 생산 및 벼 부산물에 대한 수입·수출 허가를 발급

5) 말레이시아 표준부(Department Standards Malaysia: JSM)

- » 말레이시아 표준부(JSM)은 1996년 8월 28일에 설립된 과학기술혁신부(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MOSTI)의 소속기관인 동시에 국제통상·산업부의 협력기관으로 현재는 말레이시아 표준법(1996년 제정)에 명시된 표준화 및 인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 표준부는 표준화 및 인정업무를 통하여 소비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말레이시아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다. JAKIM이 승인한 해외 할랄인증기관

1) 해외 할랄인증기관

- » 2023년 3월 기준,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가 승인한 해외 할랄인증기관은 46개국 83개소(부록 참조)

- 말레이시아 교역법(Trade Descriptions Act 2011)에 의해 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부가 승인한 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은 제품과 재화에 한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경우에도 할랄 마크 부착 가능함
- JAKIM이 승인하지 않은 할랄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과 재화는 할랄이라는 것을 표시할 수 없음
-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육류 및 육류 베이스 제품(가금육 포함)들은 JAKIM이 승인한 해외 할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함
- 또한 육류시설들은 할랄 육류 및 가금육 생산을 위한 말레이시아 프로토콜과 말레이시아 표준(MS 1500:2009)에 부합하는지 JAKIM과 수의국(DVS, Department of Veterinary Services)에 의해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JAKIM)할랄 관점에서 점검
 - (DVS)동물 건강 및 식품 안전 관점에서 점검
- » 국내에서는 (재)한국이슬람교(KMF)와 한국할랄인증원(KHA)이 JAKIM과 교차 인증이 되므로 KMF와 KHA 인증을 취득할 경우 제품에 KMF 할랄인증 로고를 부착하여 말레이시아 수출 가능.

2) 해외 할랄인증기관 승인 유효기간

- » 승인된 해외 할랄인증기관(FHCB, Foreign Halal certification Bodies)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JAKIM 웹사이트에 공지됨
- » 해외 할랄인증기관들은 JAKIM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증기관 지정기간 만료시점에 맞추어 재심사를 수행하여야 함

2. 할랄인증표준

가. 말레이시아 인증표준

» 말레이시아 표준법(Standards of Malaysia Act 1996)에 근거하여 말레이시아 표준부(Department of Standards Malaysia, JSM)에서 할랄 제품에 대한 국가인증 기준을 수립하며, 실제 인증업무는 이슬람개발부(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 JAKIM)에서 전담하고 있음.

할랄인증 기준	주요 내용
MS1500:2019	할랄식품: 생산·준비·취급 및 저장에 관한 일반지침
MS2424:2012	할랄제약: 일반지침
MS2634:2019	할랄화장품: 일반 지침(첫번째 개정)
MS2200-2:2012	이슬람 소비재 - 2부: 동물의 뼈, 피부 및 털의 사용에 관한 일반지침
MS2400-1:2019	관리 시스템의 할랄 공급체인 - 1부: 운송에 관한 일반지침(첫번째 개정)
MS2400-2:2019	관리 시스템의 할랄 공급체인 - 2부: 보관에 관한 일반지침(첫번째 개정)
MS2400-3:2019	관리 시스템의 할랄 공급체인 - 3부: 소매업에 관한 일반지침(첫번째 개정)
MS1900:2005	품질 관리 시스템: 이슬람 원칙에 따른 요구사항
MS1900:2014	샤리아 기반 품질관리 시스템: 지침이 있는 요구사항(첫번째 개정)
MS2300:2009	가치 기반 관리시스템: 이슬람 관점의 요구사항
MS2393:2013	이슬람 및 할랄 원칙: 용어 정의 및 해석
MS2565:2014	할랄 포장: 일반 지침
MS2594:2015	음용에 사용되는 할랄 화학물질: 일반지침
MS2610:2015	무슬림 친화적 현대 서비스: 요건
MS2627:2017	돼지 DNA 검출 방법: 식품 및 식료품

<표 2> 할랄 관련 규정에 대한 말레이시아 표준(MS)

나. 할랄식품에 대한 말레이시아 표준

»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표준은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에서 제정한 일련의 지침으로 제품 및 서비스에서 할랄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는 표준으로 통용됨.

- » 원자재의 조달부터 제조 프로세스, 포장, 라벨링 등 유통부터 제품이 생산되는 장비에 이르기까지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공급망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음
- »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에 비할랄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하고 생산 과정에서 할랄 원칙을 준수하는 등 제조 과정에서 비할랄물질과의 교차 오염이 없음을 보장해야 함
- »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표준은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 관광 관련 서비스 등 매우 광범위한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며 무슬림뿐만 아니라 식습관이나 문화적 선호도를 지닌 비무슬림에게도 보증을 제공하고 있음

표준 범위	주요 내용
범위	- 적용범위 제시 · 할랄 식품(영양보충제 포함)의 준비 및 취급 · 말레이시아 할랄 식품 및 식품 무역 등 비즈니스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
정의	- 샤리아 법률, 할랄, 할랄식품, 나지스, 도축, 관할당국, 구역
요구사항	- 관리 책임, 구역, 장비·설비·기계 및 가공 보조제, 위생 및 식품 안전, 할랄식품의 가공, 할랄 식품의 저장·운송·진열·판매 및 제공, 포장·라벨링 및 광고
준수	- 현장 검사를 통한 표준 준수여부 검증
할랄 인증서	- 말레이시아 관할당국에 의한 인증서 발급
할랄 인증 표시	- 인증 표준사항의 준수를 보증하는 할랄 인증 마크 표시

<표 3> 할랄 식품에 대한 말레이시아 표준(MS1500:2019) 주요 내용

다. 할랄인증을 위한 절차 매뉴얼

- » 말레이시아 할랄인증서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JAKIM)에서 할랄 식품 표준을 토대로 ‘할랄인증을 위한 절차 매뉴얼(Manual Procedure for Halal Certification Malaysia)’을 발표함

》 본 매뉴얼은 연방 및 지방차원에서 할랄 인증서 발급을 위한 기본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을 관리하기 위해선 함께 검토되어야 함

- 연방 차원에서의 인증업무 담당 : JAKIM
- 지방 차원에서의 인증업무 담당 : JAIN/MAIN

구분	제목	소제목 및 주요 내용
1장	총칙	- 제정 목적 및 권한 - 매뉴얼 및 주요 약어에 대한 정의
2장	인증 신청	- 신청 요건 및 기준 등
3장	수수료	- 공통 수수료 - 산업 유형에 따른 신청 수수료 · 식품 및 음료, 화장품, 약제, 기계 및 도축, 소비재 등 - 추가 수수료 및 납입 등
4장	등록 요건	- 일반 요구사항 · 공익, 원료의 안전성 및 승인성, 규정의 준수 등 - 특정 요구사항 등
5장	신청 절차	- 신규, 갱신, 추가 등 유형별 신청 절차
6장	감사(監事)	- 현장 감사 및 후속 감사 등 업무집행의 세부사항 감사 등
7장	모니터링	- 정기·추가 모니터링 방법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 등
8장	말레이시아 할랄인증서	- 증명서 발행, 사용 조건, 유효기간, 유실 또는 훼손된 경우, 취소, 폐기 관련 내용 등
9장	말레이시아 할랄 로고	- 형태와 특징 및 사용조건 등
10장	심사관	- 심사관의 임명, 권한 및 직업윤리 등
11장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위원회	- 위원회의 임명, 자격, 권한 분야 및 의결정족수 등
12장	표본화	- 견본·표본의 종류, 절차의 진행 및 표본의 분석 등
13장	말레이시아 할랄인증서 보유자의 책임	- 관련 법률의 준수 등 할랄인증서 보유자의 책임 제시
14장	기타 사항	- My eHALAL 시스템 사용, 매뉴얼의 준수,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예외사항 등 기타 내용
15장	부칙	- 할랄 인증품에만 허용되는 명칭, 호텔 주방에서 할랄 식품 조리대의 배치 등

<표 4> 할랄인증을 위한 절차 매뉴얼 주요 내용
JAKIM(이슬람개발부), 말레이시아 할랄인증 매뉴얼(2020)

라. 할랄보증관리시스템을 위한 지침

- » 할랄보증관리시스템을 위한 지침(Guidelines for Halal Assurance Management System of Malaysia Halal Certification)에서는 할랄 제품의 무결성을 보장·유지하기 위한 할랄보증시스템의 원칙과 적용법 등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제공함
 - 이는 공급망을 통해 품질 관리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이며, 할랄인증서 소지자가 할랄 표준, 규정 등 요구사항 수행 시 참고하는 기준임
- » 본 지침은 말레이시아 관할당국으로부터 할랄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코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음

1)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 » 할랄 요구사항의 부적합성을 최소화하고 실무에 보다 유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증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함.
- » 할랄보증관리시스템은 지속적인 통제와 모니터링 및 검증을 통해 공급망 내에서 할랄중요관리점(Halal Critical Points) 선별의 중요성을 강조함
- » 따라서 할랄보증관리시스템은 다음을 포함해야 함
 - 유효한 제품 리콜 절차
 - 제품의 원산지 및 생산 과정 등 이력추적
 - 신청서, 기록, 절차 등 관할당국이 심사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정리(filing) 시스템

2) 내부할랄위원회(Internal Halal Committee)

- »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절차(MPPHM) 및 할랄보증제도(HAS)에 규정된 요건에 의하여 내부할랄위원회를 설립
 - 할랄인증제품, 심사관, 감사관 등이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관련 법률, 규범 및 샤리아 원칙 등에 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성됨

》 내부할랄위원회는 최소 4명으로 구성되어야 함

- 2명은 반드시 관리자급의 무슬림이어야 함
- 1명은 구매/조달의 책임을 지며
- 기업에서 할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내부할랄위원회의 조정자이어야 함
- 도축장의 할랄 감독관을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함

》 내부할랄위원회 위원들은 할랄표준 및 인증 요구사항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거나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하며, 경영진은 관련 위임사항의 적격성을 확인해야 함

》 또한 할랄보증관리시스템을 시행하는데 있어 내부할랄위원회의 효과성을 매년 1회, 또는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관리 효과가 없을 시에는 즉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검토를 필요로 함

- 내부할랄위원회의 변경
- 모니터 일정의 변경
- 운영 및/또는 공급망의 변화

3) 교육 프로그램(Training Program)

》 경영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말레이시아 할랄 표준 및 인증 요건에 대하여 적절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함

》 또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관련 직원이 교육 수강을 통해 충분한 지식을 갖추어 본인의 역할과 책임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함

4) 할랄보증관리시스템의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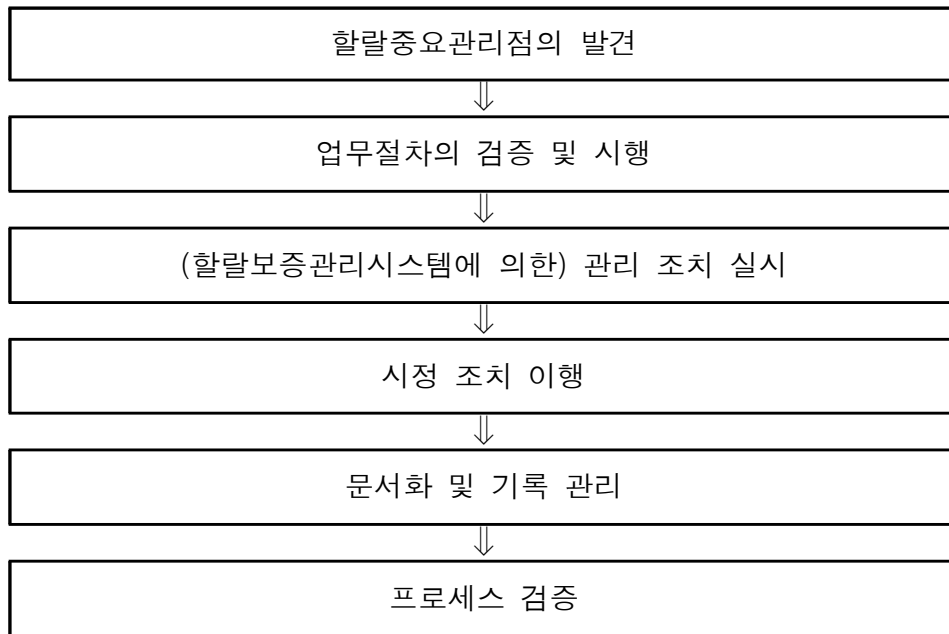
》 내부할랄위원회가 할랄보증관리시스템의 시행에 있어 중점을 두는 중요한 원칙은 아래와 같음

가) 할랄 중요 관리점의 결정

- 내부할랄위원회는 공급 체인의 모든 가능한 오염원에 대하여 할랄 표준 요건 준수 여부를 심의해야 함

나) 순서도 개발 및 검증

- 내부할랄위원회는 전체 공급망의 모든 단계를 기술한 순서도를 개발해야 하며 현장검사를 통하여 순서도가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해야함.



<표 5> 할랄보증관리시스템의 일반 원칙을 기술한 순서도

- 본 순서도는 할랄 제품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을 식별하고 샤리아를 준수·보장할 수 있도록 IHC의 제어조치로 사용될 수 있음

다) 통제 조치의 시행

- 할랄 공급망의 어느 단계에서든 위협이 발견되는 경우, 내부할랄위원회는 적절한 제어조치를 결정해야함. 이때 채택된 조치들은 말레이시아 표준이나 적용 가능한 할랄 요구사항과 일치해야 함.

라) 시정 조치의 개발

- 상시감시를 통하여 모니터링 효과를 점검하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개발해야 함. 개발한 시정조치는 제품 또는 프로세스에서 할랄 무결성을 보존해야 함.
- 할랄 무결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내부할랄위원회는 시정조치의 이행여부와 계도 기간 동안 생산된 상품이 확립된 절차에 따라 처리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 재발을 방지하고, 프로세스나 시스템을 원 상태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수립해야 함.

- 또한 제품 설명, 부적합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과 개발한 시정조치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보존해야 하며 기록물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부적합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 통제불능의 성격을 띄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 부적합 사항의 원인
- 부적합 사항의 재발을 방지하는 선제조치 사항
- 채택된 시정조치의 결과에 대한 기록
- 채택된 시정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마) 문서화 시스템 및 기록물 관리

- 내부할랄위원회는 할랄보증관리시스템의 요건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편찬, 문서화 시스템을 유지해야 함.

- 이는 할랄보증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적합성의 증거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모든 기록은 검토 및 감사를 위하여 최소 1년 이상 보관되어야 함. 또한 판독과 식별이 가능하며 검색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함

- 모든 기록과 문서는 담당자가 적법하게 서명해야 하며, 할랄보증관리시스템과 관련된 필수 문서 및 기록은 다음을 포함해야 함.

- 할랄보증관리시스템 매뉴얼
- 내부할랄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및 중요관리점에 대한 업무분장
- 내부할랄위원회 회의록
- 할랄 위협 및 중요관리점 매개 변수 목록
- 모니터링 절차에 대한 지침서 및 시정조치 사항

바) 검증 과정

- 내부할랄위원회는 기록물 및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검증을 진행해야 함.

- 모니터링 시스템
- 할랄중요관리점에 대한 개인별 준수사항
- 심사 보고

5) 제품 회수 절차의 개발

» 내부할랄위원회는 부적합으로 확인된 제품을 신속하게 전량 회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수립해야 함

» 회수 절차는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해야 함

- 관련 이해 당사자(규제 당국, 고객 또는 소비자)에게 통지
- 재고품 및 회수품의 관리·취급
- 작업 수행 순서
- 분리 및 검역이 필요한 철수/수출 할랄 제품
- 철수/회수의 원인, 범위, 결과에 대한 문서화 및 의사결정자에 대한 보고
- 철수/회수 절차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한 내부할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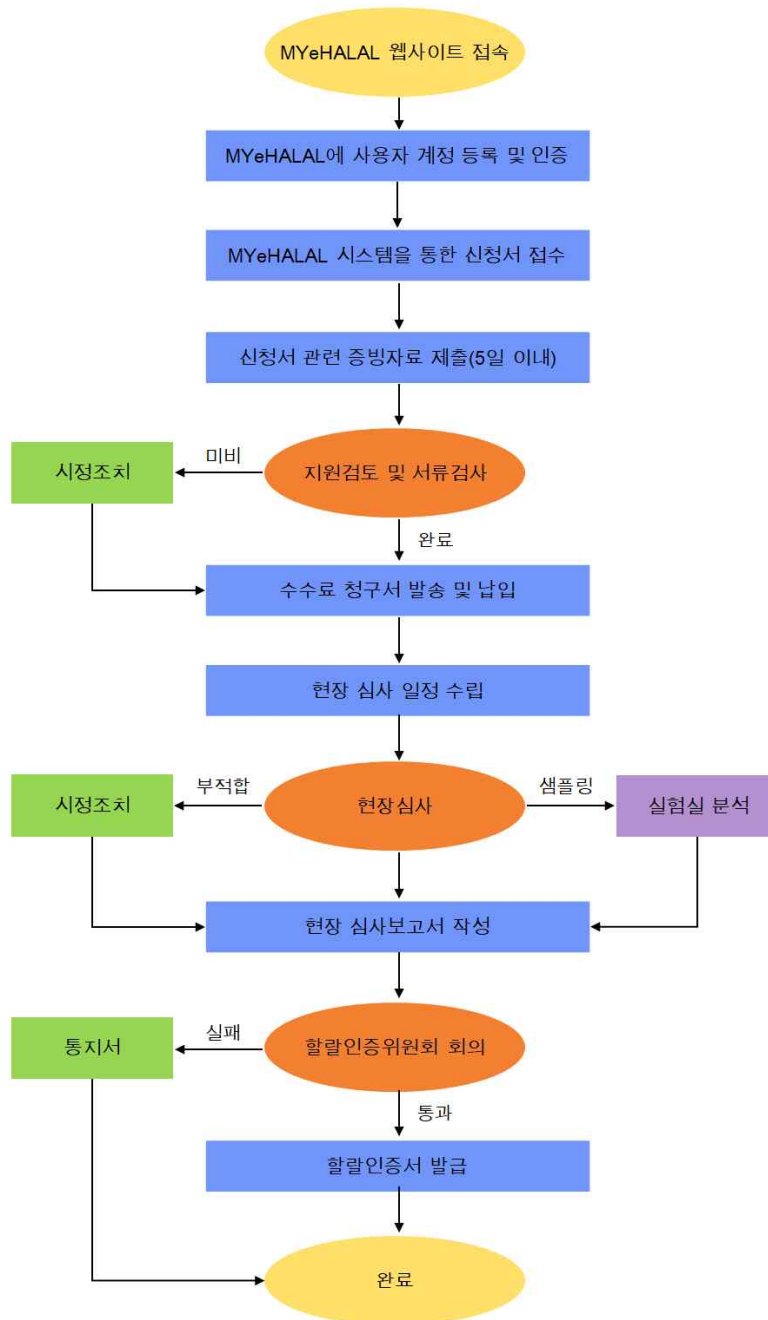
6) 이력추적

» 내부할랄위원회가 구축한 할랄보증관리시스템은 공급망을 통한 이력추적 또한 고려해야 함

3. 할랄인증 절차

가. JAKIM 할랄인증 절차

》 말레이시아 JAKIM 할랄인증 절차는 아래와 같음



<그림 2> 말레이시아 할랄인증 절차도
출처: JAKIM(2020), 할랄인증을 위한 절차 매뉴얼

1) MYeHALAL 웹사이트 접속

» 할랄 인증서 관련 모든 신청은 공식 웹사이트(www.halal.gov.my) > System MYeHALAL을 통해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제출함

등록 경로	등록 방법
온라인	<p>① www.halal.gov.my 접속 ⇒ 아래의 System MYeHALAL 클릭</p> 
	<p>② 말레이시아 국내업체는 Domestic, 해외업체는 International을 클릭하여 사용자 계정 등록</p> 
	<p>③ 사용자 계정 등록 후 로그인</p> 

» MYeHALAL 시스템에 사용자계정 등록 후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며, 관리자에 의해 사용자 계정 등록이 승인되기까지 약 24시간이 소요됨.

2) 신청서 접수

» 신청자는 「할랄인증을 위한 절차 매뉴얼」에 명시된 신청조건·기준 및 다음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심사 및 신청 카테고리를 적합하게 선택할 것
- 신청자, 원자재 및 성분, 수수료, 제품, 메뉴, 서비스 등 모든 항목을 정확하고 상세하며 철저하게 작성할 것
- 약초 및 관련 제품은 상표명 뿐 아니라 원재료명까지 명기할 것
- 상품명과 포장 또는 라벨에 표시된 제품명이 일치해야하며, 외국어로 된 제품의 경우 말레이시아어 및 영어로 번역하여 기재할 것

» 관련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음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소개- 법인등록증 사본<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업체: 말레이시아 회사 법인등록증, 말레이시아 지방정부 제조허가증- 인증제품 소개- 사용된 원료목록- 재료공급업체 및 제조업체 이름과 주소- 제품에 투입되는 각각의 생산원료에 대한 할랄인증 사본- 포장재질의 종류- 제품 제조공정 및 절차- 타 인증서(예시: HACCP, ISO, GHP, GMP, TQM)- 현장 또는 공장의 위치 지도
-------	--

3) 지원검토 및 서류검사

» 신청자는 MYeHALAL 시스템 사용자 계정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할 당국은 이를 기반으로 서류 검토를 진행, 미흡한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음

» 관련 증빙자료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당국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할 제품이나 메뉴에 따라 양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분야별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음

구분	신청 대상
식음료	· 제조업체 및 생산자 · 제품 포장업체 · (주방을 사용하는 경우) 요리 및 조리업자 · 상표권자
화장품	· 제조업체 및 생산자 · 제품 포장업체 · 상표권자
의약품	· 제조업체 및 생산자 · 제품 포장업체 · 상표권자
음식점	· 호텔 경영자 · 식당이나 카페 경영자 · 구내식당 종사자 · 빵집 경영자 · 프랜차이즈 업체 경영자 · 기타 식음료 조제업자 · 컨벤션센터 등 연회홀의 주방 경영자 · 푸드코트 내 카페테리아 운영자 · 키오스크 사업가
기타 할랄인증 생산품	· 제조업체 및 생산자 · 제품 포장업체 · 상표권자
군납업체	· 운송업자 · 수입업자
도축장	· 계육 도살업자 및 사업자 · 반추동물 도축자 및 사업자 · 할랄의 영향을 받는 기타 도축 사업자

4) 수수료 청구서 발송 및 납입

» 신청이 완료되면 수수료 청구서를 수령하게 되며, 그에 따른 수수료를 14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5) 현장 심사

» 수수료를 납부하면 현장 심사 일정이 정해지며, 그에 따라 심사를 받음

》 신청자는 언제든지 현장감사를 수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하며, 현장감사 수행시 필요한 문서와 기록을 제공해야 함

- 현장심사는 모든 원료, 가공 및 저장과정, 시설, 제품 라벨에 명기된 정보와 업체 현장과의 일치성에 대한 검증 위주로 진행하며, 검증 내용을 심사보고서에 기록함
- 필요한 경우, 입증을 위한 분석용 샘플링을 현장심사시 진행할 수 있음

》 최소 2인 이상의 심사관이 현장심사를 진행(샤리아 전문가 1인, 기술분야 전문가 1인)하며, 현장심사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짐

- 이해당사자에 대한 면담요청권
- 사진, 문서, 사본 등 증빙자료 요청권
- 신청취소에 대한 허가권한
 - 신청자가 현장심사에 불응하는 경우
 - 신청자가 규정된 현장심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현장 상황의 현저히 일치하지 않을 경우
 - 신청자가 현장감사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 기타 신청취소가 합당하다 여겨지는 경우

6) 현장 심사보고서 작성

》 심사관은 현장 심사보고서 사본을 보관, 후속조치를 위해 MYeHALAL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또한 심사관은 현장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할랄인증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7) 할랄 인증위원회 회의

》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할랄인증서가 발급됨

》 할랄 인증위원회는 할랄 제도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절차 및 인증 신청 요소 등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짐

- 》 호텔 주방의 경우 JAKIM이 명시한 식·음료 및 식품 전반에 대한 분류에 따라 구성·운영해야 함
- 》 당국은 제3자 또는 컨설턴트 등 중간자를 거치지 않고 신청자와 지속적으로 거래해야 함

8) 할랄인증서 발급

- 》 JAKIM은 할랄인증서를 발급받은 제조업체, 식품 취급사업장 및 도축장이 할랄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진행함
 - 따라서 인증서 발급 이후, 신청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MYeHALAL 시스템을 통해 신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 갱신의 경우 인증서 유효기간(2년) 만료 3개월 전에 신청 완료하여야 함
 -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규발급으로 분류됨

나. 할랄인증 수수료 및 유효기간

- 》 할랄 인증서는 2년 동안 유효하며, 인증수수료는 제품 및 산업군에 따라 구분되며 일반적인 분류는 다음과 같음
 - 단, 도축장의 경우 할랄 인증서의 효력은 1년간 유효

연번	구분	신청 범주	수수료(RM) ¹⁾
1	식음료	아세안 국가	2,500
2	화장품		
3	의약품		
4	일반 소비재	기타 국가 (한국 포함)	10,000
5	기계 및 기구		

- 》 식음료 사업장의 경우 수수료는 다음과 같으나 케이터링 및 컨벤션센터의 주방은 따로 구분하고 있음

1) 1링깃=288.47원(2023.8.14. 기준)

구분	세부 유형	연간 수수료(RM)
식음료 사업장	식당 및 카페	100
	매점	
	빵집	
	뷔페	
	구내식당 및 푸드코트	
	키오스크	
호텔 주방	4성급 또는 그 이상	500
	3성급 또는 그 이하	200
케이터링 및 컨벤션센터 주방	연간 매출 RM 500,000.00 이하	100
	연간 매출 RM 500,000.00 ~ RM 5,000,000.00	400
	연간 매출 RM 5,000,000.00 초과	700

» 도축장 또한 품목과 일일 생산 축산물의 규모에 따라 연간 수수료를 부과함

구분	분류 기준			연간 수수료(RM)
	부지 크기	품목 분류	일일 생산(마리)	
도축장	소형	닭	1~2,999	100
		염소/양	1~499	
		소/물소	1~49	
	중형	닭	3,000~10,000	400
		염소/양	500~700	
		소/물소	50~100	
	대형	닭	10,000 초과	700
		염소/양	700 초과	
		소/물소	100 초과	

» 수수료는 JAKIM / MAIN / JAIN에 지불 가능한 우편환, 은행어음 또는 온라인 송금 형태로 지불 가능하며, 환불은 불가함

4. 수입절차

가. 개요

》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 당국에서는 관련 요구사항을 제정하였으며 종교적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수입상품에 대하여는 이행강제 사항을 규정함.

- 절대 금지사항

- 말레이시아의 종교나 신념에 민감한 수입품

- 승인 및 허가가 필요한 제품

- 알코올 음료
- 동물 및 동물 제품
- 특정 건강 및 식용 식품
- 육류 및 육류 제품
- 식물 및 식물 제품
-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 승인 및 허가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정부기관의 추가 승인 필요

- 따라서 말레이시아에서 수입 규제 또는 금지 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수입 규제나 금지 품목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수입허가를 받아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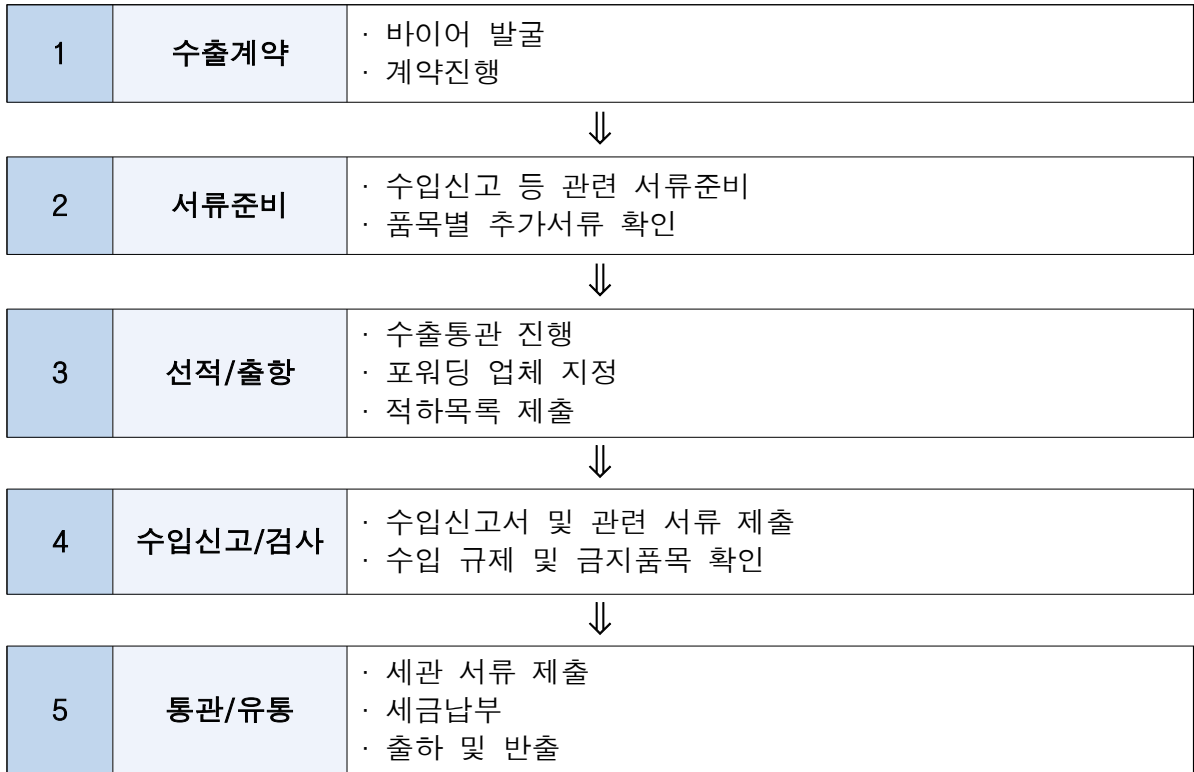
》 말레이시아로의 수입은 법적으로 인정한 항구 및 통관 공항에서만 허용하며 관세 및 세금은 수입 제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수입 관세는 말레이시아로 들어오는 모든 재화에 부과되며,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참고로 한국과 말레이시아 양국은 AEO MRA(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를 체결하여 두 나라의 수출입기업들은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나. 단계별 프로세스

» 말레이시아로의 식품수출은 수출계약, 서류준비, 선적 및 출항, 수입신고 및 검사, 통관 및 유통의 총 5단계를 거쳐 이루어짐.



1) 수출계약

- » 바이어(거래선)와 가격, 선적, 결제, 포장 등 조건을 명시한 수출계약을 체결함.
- » 성립된 계약을 토대로 말레이시아로의 수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규정을 알아본 후 부대서류를 준비할 것.

2) 서류준비

- » 관할 지역의 세관에 제출할 수입신고서를 작성해야 함.
 - 수입신고서는 상품 및 포장물에 대한 정보(상자의 개수, 설명, 관세부과 대상 물품의 무게, 크기, 수량, 가치, 원산지국가 등)를 정확히 기입하여 관할 수입지역의 관세청에 제출.

》 수입신고서 기재 내용

- 계좌번호
- 제품포장에 대한 설명
- 수량
- 무게
- 원산지
- 가치
- 최종 목적지

》 세관제출 서류

- 세관 신고 양식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 상업송장
 - 상업송장 발행이 어려운 경우 견적송장으로 대체 가능
- 포장명세서
- 기타 서류
 - 원산지증명서* 및 분석서 등 상품의 출입 가능성 결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란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증명서로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발급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품목별 추가서류

품목	추가서류
육류 (가금육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허가서(Import Permit) - 육류 및 가금육 수출증서(FSIS Form 9060-5) - 할랄 수출인증서 - 허가증(수의검역부 소관/Veterinary Health Certificate)
수산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허가서(Import Permit) - 건강증명서(Health Certificate) - 소비안전명세서(연방 혹은 도시 건강관리 기관 발급) - 항생물질명세서(새우, 갑각류 및 기타 어류 등 항생물질 유무 확인)
식물성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허가서(Import Permit) - 식물검역증명서(수출국 NPPO 발급)

3) 선적/출항

- » 수출통관은 관세사를 통하는 경우가 많으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물품신고, 세관검사, 세금납부 등을 기업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음.
- 관세사를 통해 수출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세관에 수출신고 후 부여받은 수출신고 필증을 포워딩 업체에 교부. 포워딩 업체는 운송(내륙/해상)을 통해 목적지까지의 운송 전 과정 혹은 일부과정을 책임짐.
- » 수입자는 입항지에 수입물품이 도착하기 14일 전에 세관 서류와 관세납부를 처리해야 하며, 선통관을 위해서는 선하증권, 허가서, 선적 적하목록 등을 사전에 제출하고 선박의 예상도착시간을 확정해야 함.

4) 수입신고/검사

- » 말레이시아 수입의 경우 관세사 제도가 없는 관계로 포워딩 업체가 관세사 역할을 병행하고 있음. 따라서 포워딩 업체에서 수입신고서 및 제출요구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수입허가를 받은 후 검역 실시.
- » 검역의 경우 말레이시아 수출입식품검역처(MAQIS: Malays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s)에서 총괄하며 말레이시아 검역 및 검사 서비스법의 적용을 받음.
- » 말레이시아 검역 및 검사 서비스법에 따른 품목별 세부사항
 - 육류(가금육 포함)
 - 도축법에 따라 할랄인증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이 인정한 도축장에서 도축한 제품이어야 함.
 - 수산 식품
 - 말레이시아 수산부(DOF: Department of Fisheries Malaysia Official Portal)의 지침에 따라 활새우 종자(흰새우, 타이거새우 등)의 수입을 금지함.

- 식물성 제품
 - 검역 및 검사 서비스법 외에 1976년 식물검역법과 1981년 식물검역을 적용하며,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상품은 식물 병해충이 없어야 함.
 - 또한 수입을 통한 유해 병해충 및 기타 저장상품 병해충의 유입을 막기 위해 식물검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 모든 수입식품은 다강넷(Dagang Net: www.dagangnet.com)을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물품의 운송현황 또한 조회 가능함.
- » 95% 이상의 물품이 별도의 추가검사 없이 통관함. 즉, 5% 정도만 샘플로 선택하여 육안 및 스캔검사를 시행하므로 통관이 어렵지 않으나 적발시 수입허가 취소에 벌금(3년 소급적용)을 부과.





5) 통관/유통

- » 통관시 판매세 및 소비세가 발생할 수 있다. 관세율의 경우 운임보험료 부담조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에 따라 계산하며 모든 관세 및 세금은 물품의 반출 전 납부하여야 함.
- 판매세는 0~10%를 적용하고 있으나 품목별로 상이하므로 추가적인 확인 필요.
- 말레이시아로 수입하는 한국제품의 경우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관세가 매우 낮은 편이나 FTA 적용을 원할 시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 제출한 납세신고가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물품이 반출되며 유통이 이루어짐.
- 신고된 품목 분류, 납부 세액 및 FTA 원산지 증명에 대한 사후 심사를 추후 진행 가능함.









부록

말레이시아가 승인한 할랄인증기관 목록(2023.3. 기준)








No	Country	Organization	Halal Logo
1	AUSTRALIA	Australian Halal Authority & Advisers (AHAA)	
2	AUSTRALIA	Perth Mosque Incorporated (PMI)	
3	AUSTRALIA	Islamic Association of Katanning (IAK)	
4	AUSTRALIA	Supreme Islamic Council of Halal Meat in Australia (SICHMA)	
5	AUSTRALIA	Halal Certification Authority Australia (HCAA)	
6	AUSTRALIA	Islamic Co-ordinating Council of Victoria (ICCV)	









7	AUSTRALIA	ANIC Halal Authority (ANIC)	
8	AUSTRIA	Islamic Information Documentation and Certification GmbH (IIDC)	
9	ARGENTINA	Islamic Centre of the Argentine Republic	
10	BANGLADESH	Islamic Foundation	
11	BELGIUM	Halal Food Council of Europe (HFCE)	
12	BOSNIA AND HERZEGOVINA	Agency for Halal Quality Certification (AHQC)	<p>HALAL QUALITY TRADEMARK</p> <p><small>Before applying for Halal Quality Trademark for products, it is necessary to read the Halal Quality Trademark Guide.</small></p> 
13	BRAZIL	Fambras Halal Certificação Ltda	
14	BRAZIL	CDIAL Halal Certification Authority Ltda	

15	BRUNEI	Lembaga Mengeluarkan Permit Import Halal Bahagian Kawalan Makanan Halal Jabatan Hal Ehwal Syar'iah	
16	CANADA	Halal Montreal Certification Authority (HMCA)	
17	CANADA	Halal Monitoring Authority (HMA)	
18	CHINA	Shandong Halal Certification Service (SHC)	
19	CHINA	China Islamic Association (CIA)	
20	CHINA	ARA Halal Certification Services Centre Inc.(ARA)	
21	CHINA	Linxia Halal Food Certification Centre (GANSU)	
22	CHINA	Shaanxi Shang Pin Yuan Halal Food & Restaurant Management Limited Company (Shaanxi)	







23	CHINA	Halal Certification Services Chongqing (HCS)	
24	CHILE	Centro Islámico de Chile (CICH)	
25	CROATIA	Centre For Halal Quality Certification (CHQC)	
26	EGYPT	Egyptian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Quality (EOS)	
27	FRANCE	Ritual Association of Lyon's Great Mosque	
28	GERMANY	Halal Control GmbH	
29	INDIA	Halal India Pvt. Ltd.	
30	INDIA	JUHF Certification Pvt. Ltd.	





31	INDIA	Jamiat Ulama-I-Hind Halal Trust (Juhht)	
32	INDONESIA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Kementerian Agama Republik Indonesia (BPJPH)	 
33	IRAN	Islamic Halal World Institute	
34	IRELAND	Islamic Foundation of Ireland (IFI)	
35	ITALY	Halal Italia	
36	ITALY	World halal Authority (WHA)	 


37	JAPAN	Japan Muslim Association (JMA)	
38	JAPAN	NPO Japan Halal Association (JHA)	Product certification  <small>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NPO Japan Halal Association.</small> Slaughterhouse Certification 
39	JAPAN	Japan Islamic Trust (JIT)	
40	JAPAN	Muslim Professional Japan Association (MPJA)	
41	JAPAN	Nippon Asia Halal Association (NAHA)	
42	JAPAN	Japan Halal Foundation (JHF)	

43	KAZAKHSTAN	ALE “Association Halal Industry of Kazakhstan” (AHIK)	
44	KAZAKHSTAN	Halal Damu LLP	
45	KENYA	Kenya Bureau of Halal Certification (KBHC)	
46	LITHUANIA	World Halal Trust (WHT)	
47	MALDIVES	Ministry of Islamic Affairs	
48	MOROCCO	Institut Marocain De Normalisation (IMANOR)	
49	NETHERLANDS/ HOLLAND	Control Office of Halal Slaughtering B.V & Halal Quality Control (HQC)	
50	NETHERLANDS/ HOLLAND	Halal Correct Certification (TQHCC)	

51	NETHERLANDS/ HOLLAND	Halal Feed and Food Inspection Authority (HFFIA)	
52	NEW ZEALAND	The Federation of Islamic Associations of New Zealand (FIANZ)	
53	NEW ZEALAND	New Zealand Islamic Development Trust (NZIDT)	
54	PAKISTAN	JMUIM Halal Pakistan	
55	PAKISTAN	Punjab Halal Development Agency (PHDA)	
56	PHILIPPINES	Islamic Da'wah Council of The Philippines (IDCP)	
57	PHILIPPINES	National Commission on Muslim Filipinos (NCMF)	
58	PHILIPPINES	Halal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ies of the Philippines (HICCIP)	

59	POLAND	Muslim Religious Union in Poland(MRU)	
60	POLAND	Polski Instytut Halal	
61	PORTUGAL	Instituto Halal de Portugal (IHP)	
62	SINGAPORE	Majlis Ugama Islam Singapura (MUIS)	
63	SOUTH AFRICA	National Independent Halaal Trust (NIHT)	
64	SOUTH AFRICA	South African National Halaal Authority (SANHA)	
65	SOUTH AFRICA	Muslim Judicial Council Halaal Trust (MJCHT)	

66	SOUTH KOREA	Korea Muslim Federation (KMF)	
67	SOUTH KOREA	Korea Halal Authority Corporation (KHA)	
68	SPAIN	Estándar Global de Certificación Halal, S.L.	
69	SPAIN	Halal Food and Quality, S.L (HFQ)	
70	SRI LANKA	HALAL ACCREDITATION COUNCIL (GUARANTEE) LIMITED	
71	SWITZERLAND	Halal Certification Services GmbH	
72	TAIWAN	Taiwan Halal Integrity Development Association (THIDA)	

73	THAILAND	The Central Islamic Council of Thailand (CICOT)	
74	TUNISIA	Institut National De La Normalisation Et De La Propriete Industrielle (INNORPI)	
75	TÜRKIYE	Kas Uluslararası Sertifikasyon Göz. Tek. Kont. Hizm. Ltd. Sti. (KASCERT International)	
76	TÜRKIYE	Association for the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of Food and Supplies	
77	UKRAINE	Certification Centre "Halal" LLC	
78	UNITED KINGDOM	Halal Certification Europe (HCE)	
79	UNITED KINGDOM	Halal Food Authority Ltd. (HFA)	
80	UNITED STATES OF AMERICA	Islamic Food and Nutrition Council of America (IFANCA)	

81	UNITED STATES OF AMERICA	Islamic Services of America, Inc (ISA)	 
82	UNITED STATES OF AMERICA	American Halal Foundation (AHF)	
83	VIETNAM	Halal Certification Agency Vietnam (HCA)	

FOODCERTI 이슈리포트 (Vol. 28)
말레이시아 할랄인증제도

기획 및 작성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처 한국식품연구원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245
1899-0559

발행인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김진

자료게재 www.foodcerti.or.kr

* 본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가 작성한 보고서임을 밝혀야 함